공 개

의안번호	제 11 호
의 결 연 월 일	2026. 1. 7. (제 1 차)

의결사항

㈜금호에이치티의 공시의무 위반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권 대 영
제출 연월일	2026. 1. 7.

1. 의결주문

㈜금호에이치티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금호에이치티(이하 '회사')의 공시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조사기간 : '25.9.11.~ 12.4.)한 결과, 발견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 과징금 : ㈜금호에이치티[코스닥상장법인] 12,000,000원

4. 참고사항

※ 금융감독원장이 안건 상정을 요청하는 사항임

가. 관계법규 : <붙임 1>

□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제1항 제8호, 제429조 제3항 제2호

나. ㈜금호에이치티에 대한 과징금 산정내역 : <붙임 2>

(별지)

㈜금호에이치티에 대한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는 ㈜금호에이치티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제1항 제8호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사유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과징금 12,000,000원을 부과한다.

□ 피조치자의 인적사항

○ ㈜금호에이치티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

- 대표이사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본점 소재지 : 광주광역시 광산구 용아로 717

□ 조치이유

○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 취득 결정, 자기주식 처분 결정) 제출의무 위반

- 주권상장법인은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것을 결의한 날의 다음 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회사는 2021.2.10. 자기주식인 전환상환우선주 83,334주를 ㈜□□□□으로부터 취득한 후 같은 날 ■■■■ ■■에 처분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하였음에도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결정에 관한 주요사항보고서를 각각 법정기한('21.2.15.)을 51영업일 경과하여 2021.4.28.에 지연제출한 사실이 있음

<붙임 1>

관 계 법 규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제6호의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내용을 기재한 보고서(이하 "주요사항보고서"라 한다)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59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8. 자기주식을 취득(자기주식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의 체결을 포함한다) 또는 처분(자기주식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의 해지를 포함한다)할 것을 결의한 때

제429조(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③ 금융위원회는 제159조제1항,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중에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형성된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일일평균거래금액의 100분의 10(20억원을 초과하거나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제159조제1항,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

제430조(과징금의 부과) ③ 금융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이 행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신설된 법인이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2.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25조(과징금의 부과) ① 금융위는 위법행위가 법 제429조, 법 제429조의2 또는 법 제429조의3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위법행위에 대해 법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 위반의 사유로 검찰 수사가 개시되거나 공소가 제기됨에 따라 각 급 검찰청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법 제429조의2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융위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별표 제2호] '과징금 부과기준'

3. 기준금액과 기본과징금의 산정

다. 법 제429조제3항(주요사항보고서) 위반사항

(1) 기준금액은 제출의무 발생일(거짓기재·기재누락의 경우 제출일) 전후 각각 15거래일간(15거래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이 경우 정리매매기간은 제외한다)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일일평균거래금액으로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당해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하거나 일일평균거래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

(2) 기본과징금은 기준금액에 이 기준 4.에서 규정하는 부과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4. 부과비율의 산정

가. 부과비율은 위반행위의 중요도 및 감안사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법 제4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위반사항 중 (2)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

위반행위의 중요도 / 감안사유	상	중	하
상향조정사유 발생	100분의 3	100분의 2.4	100분의 1.8
해당사항 없음	100분의 2.4	100분의 1.8	100분의 1.2
하향조정사유 발생	100분의 1.8	100분의 1.2	100분의 0.6

나. 위반행위의 중요도 판단기준

(2) 비계량적 위반사항

(가) 일반기준

위반행위의 중요도를 상·중·하로 판단함에 있어 다음의 판단요소를 각각 고려하여 그 중에서 가장 중한 등급을 적용한다.

중요도 / 구분	상	중	하
주가변동률	200% 이상	50% 이상 200% 미만	50% 미만

주1) 공시의무발생일(거짓기재·기재누락의 경우 제출일로 하고, 내부자거래 사전계획을 정당한 사유 없이 철회하는 경우에는 거래계획 제출일로 한다) 전후 15거래일간(15거래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하고, 정리매매기간은 제외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당해 기간동안 거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요도등급을 Ⅴ등급으로 한다.) 주가변동률[{(당해종목 최고주가/최저주가)×100} - {(동일업종 최고주가/최저주가)×100}]

다. 감안사유 판단기준

구 분	조 정 기 준
상향조정사유	· 위반행위를 은폐 또는 축소하기 위하여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한 사실이 있는 경우 · 공시위반행위로 조치(경고 및 주의 제외)를 받은 이후 1년 이내에 공시위반행위로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되는 경우 (생략)
하향조정사유	· 위반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는 경우(다만, 법 제180조 위반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또는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 신고하거나, 조사 과정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 (생략)

[별표 3] 증권·선물조사결과 조치기준

2. 위법행위의 동기 및 결과 판단기준

가. 동기·결과의 판단요소

【 위법행위 동기 】

(1) 고　　의 : 위법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위법행위를 한 경우
(2) 중 과 실 : 당해 행위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하게 결한 경우
(3) 과　　실 : 정상의 주의를 태만히 하거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한 경우

【 법규위반 결과 】

○ 증권·파생상품시장에 미친 영향, 증권·파생상품시장의 공정거래질서, 사회·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 관련법규를 위반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그 경중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한다.
(1) 사회적 물의야기
(2) 중대
(3) 경미

나. 판단기준

동기 / 결과	고의	중과실*		과실**
		공시위반	보고의무위반	
사회적물의야기	A	C	D	D
중　대	B	C	D	D
경　미	D	D	D	E

* 공시위반 또는 임원보고의무위반에 한한다.
** 불공정거래의 경우 중과실을 포함한다.

3. 조치기준

판단결과	조치기준	
A	고 발	다만, 공시위반의 경우는 이 기준 5.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C(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등의 조치를 원칙적으로 부과하되, 예외적으로 A(고발) 또는 B(수사기관 통보) 조치를 병과
B	수사기관통보	
C	과징금	

< 붙임 2 >

㈜금호에이치티에 대한 과징금 산정내역

Ⅰ. 산정원칙

□ 주요사항보고서 중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직전 사업연도 중에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일일평균 거래금액의 10/100(20억원을 초과하거나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억원)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제3항 제2호]

Ⅱ. 산정결과

□ **총 과징금 부과금액 : 12,000,000원**

(단위 :원)

구 분	과징금 부과금액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 취득 결정) 제출의무 위반	6,000,000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 처분 결정) 제출의무 위반	6,000,000
합 계	**12,000,000**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자본시장조사총괄과	공 시 심 사 국
연 락 처	02-2100-2605	02-3145-8470